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제18조).
- 파.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되,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20조).
- 하.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함(제21조).
- 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제26조).
- 너.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함(제27조).
- 더.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제28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법률 제1743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단서 중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으로, “使用者”를 “사용자”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

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횡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5. 31. 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11. 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추가하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등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함(제81조제1항제4호, 제81조제2항 신설).

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94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 용 노 동 부 장 이 재 갑

●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